

주주총회소집공고

2015 년 5월 4일

회 사 명 : (주)BNK금융지주
대 표 이 사 : 성 세 환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전 화)(051)620-3000
(홈페이지)<http://www.bnkf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장 (성 명)정준현
(전 화)(051)620-3031

BNK

주주총회 소집공고

(2015년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하여 2015년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5년 5월 13일(수요일) 오전 10:30

2. 장 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부산은행 본점23층 SKY홀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나. 의결사항

(1) 제1호 의안 : 경남은행 비지배주주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공고사항 비치 및 공시

상법 제542조의 4등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공고사항』을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 또는 전자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위임장 용지의 교부안내

가. 위임권유기간 : (시작일) 2015년 5월 4일, (종료일) 2015년 5월 13일

나.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

- 권유자 또는 대리인이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권유자가 발행인인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www.bnkfg.com
홈페이지의 관리기관	BNK금융지주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시 안내여부	위임장용지 교부 안내기재 필

※ 위임장용지는 당사 홈페이지/투자정보/전자공시/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015.5.4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성 세 환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 재 훈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기간: 2015.01.01 ~ 2015.04.01)

회차	개최 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박홍대 (출석률: 100%)
			가결 여부	김성호 (출석률: 66%)	김우석 (출석률: 66%)	이중수 (출석률: 100%)	이봉철 (출석률: 100%)	문재우 (출석률: 100%)	김창수 (출석률: 100%)	
1	15.02.04	1. 2014년도 사외이사 평가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신임 (3.27)
		2. 임원보수규정 개정(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집행임원운영규정 개정(안)	수정 가결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4.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 관련 내규 제 개정(안)	수정 가결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5. 그룹임원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제4기(2014년도)결산 결과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당사와 BNK캐피탈 간 거래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9. IT 자원 통합구매 계약 및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포괄 거래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1. 경영진 임명 보고 2. 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의 책임자 임명 보고 3. 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4. 2014년도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거래 내역 결과 보고 5.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6.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2	15.02.27	1. 2014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및 보상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신임 (3.27)
		2. 장기성과 현금보상 성과평가 확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 개정(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장기성과 현금보상기준 개정(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15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목표 부여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장기성과 현금보상 계약 체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이사 후보 확정(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9.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0. 정관 일부 변경(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1. 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사항 결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1. 이사회 의장 선임 - 대표이사 회장 성세환	가결	불참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선임사외이사 선임	가결	불참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가결여부	김성호 (출석률: 66%)	김우석 (출석률: 66%)	이종수 (출석률: 100%)	이봉철 (출석률: 100%)	문재우 (출석률: 100%)	김창수 (출석률: 100%)	박흥대 (출석률: 100%)
3	15.03.27	- 사외이사 김성호				퇴임 (3.27)				
		3. 이사회내 위원회별 위원 선임(안)	가결	불참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1. 이사회내 위원회별 위원장 선임 보고 2.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 보고 3. 사외이사 기부금 지원내역 보고								
4	15.04.01	1. 경남은행 비지배주주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가결	찬성	찬성	퇴임 (3.27)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15년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사항 결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1.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기간 : 2015.01.01 ~ 2015.04.01)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회운영위원회	상임이사 성세환, 사외이사 김우석, 사외이사 문재우, 사외이사 김창수	2015.03.27	1. 위원장 선임 : 사외이사 김우석	가결
			2.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계획(안)	가결
리스크관리위원회	상임이사 정민주, 사외이사 김성호, 사외이사 김우석, 사외이사 이종수, 사외이사 문재우	2015.02.04	1. 리스크관리협의회의규정 개정(안) <보고사항> 1. '14년말 그룹 목표 BIS비율 관리현황 보고 2.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가결
		2015.03.27	1. 위원장 선임: 사외이사 김우석	가결
		2015.04.01	1. 경남은행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리스크 점검	가결
경영발전보상위원회	비상임이사 이봉철, 사외이사 김성호, 사외이사 김우석, 사외이사 이종수, 사외이사 문재우, 사외이사 김창수	2015.02.27	1. 2014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및 보상	가결
			2. 장기성과 현금보상 성과평가 확정	가결
			3.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 개정(안)	수정 가결
			4. 장기성과 현금보상기준 개정(안)	수정 가결
			5. 2015년도 경영진 단기성과목표 부여	수정 가결
			6. 장기성과 현금보상 계약 체결	수정 가결
	2015.03.27	1. 위원장 선임: 사외이사 김창수	가결	
감사위원회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김성호, 사외이사 김우석, 사외이사 이종수, 사외이사 문재우	2015.02.27	1. 감사위원회위원 후보 추천(안)	가결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김창수			
그룹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상임이사 성세환, 비상임이사 이봉철 사외이사 김성호, 사외이사 문재우 사외이사 김창수	2015.02.04	1.부산은행 은행장 후보 추천	가결
		2015.02.27	2.BNK캐피탈 대표이사 후보 추천 1.지주 상임이사 후보 추천(안)	가결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상임이사 성세환, 비상임이사 이봉철 사외이사 김성호, 사외이사 김우석 사외이사 문재우, 사외이사 김창수 사외이사 박흥대	2015.03.27	1.위원장 선임 : 사외이사 김성호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주1)	지급총액 주2)	1인당 평균 지급액 주3)	비고
사외이사	5	2,500	55	11	
비상임이사	1		12	12	

주1) 주총승인금액 : 상임이사 및 집행임원 보수 포함

2)지급총액 및 인원수 : 2015년도 3월말까지 지급한 임원 보수총액(퇴임이사 포함)

3)1인당 평균지급액 : 지급총액 / 인원수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음

BNK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BNK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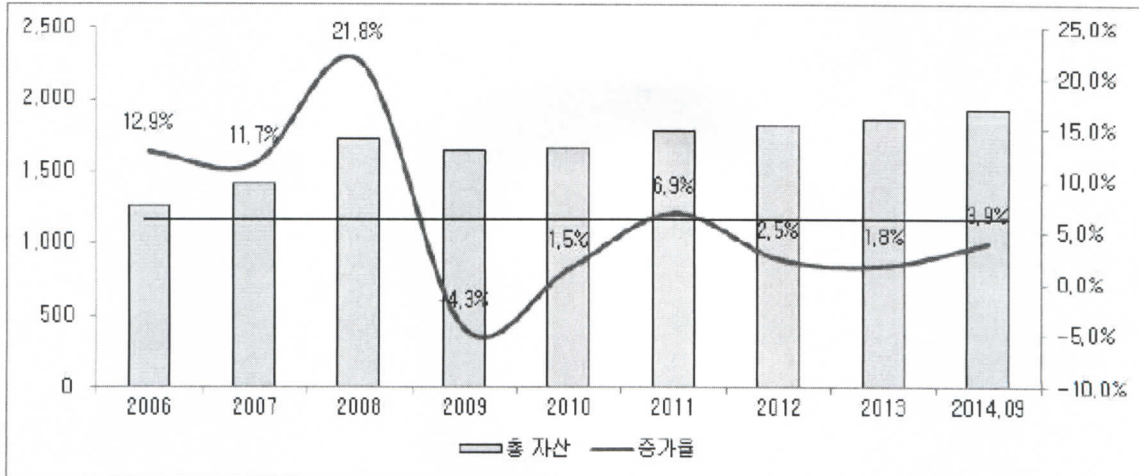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수입원이며,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BNK금융지주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여신전문업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금융부문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BNK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및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당사의 주력 자회사가 영위중인 은행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은행업의 성장성은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인 2007년 은행업의 자산증가율은 22%를 기록했으나,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연평균 1.6%의 낮은 자산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듯 대외적인 사유로 인해 국내경기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는 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구조적인 저성장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은행업의 성장성은 향후에도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권 총자산 성장성 추이]

(단위: 조원, %)



은행권 총자산 성장성 추이

(Source: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경기변동의 특성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들은 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재정·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글로벌경기 둔화와 이에 대한 각국 정부의 양적완화 및 기준금리 인하 등의 대응으로 은행업 내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둔화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기관 및 국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위험 및 자산의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에 나타난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규제강화, 미국 경제의 역할 축소, 다국체제의 부활 등 각 금융환경의 디커플링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선진국 국채 등 안전자산에 대한 인식변화,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경계, 성장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유럽은행들의 디레버리징 및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을 통한 부채청산 방안을 실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위험과 양적완화의 점진적 종료를 위한 규모 축소, 중국의 경착륙 우려 등의 이슈는 은행의 대출기준 강화와 기업들의 투자심리 약화로 연결되고 있어 성장 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IS반군의 테러에 의한 국제질서 붕괴를 비롯해 여전히 대한민국 내에 잠재해 있는 북한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국내외적 경제환경에 영향을 주어 언제든지 투자심리 약화 또는 국제금융전

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정서 등의 외생변수에 따른 글로벌경기 둔화와 금융시장의 조정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요국들의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 추세는 글로벌 금융환경 내에 은행업을 필두로 한 금융업 전반의 수익성 저하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수입원이며,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BNK금융지주에 속하는 계열사는 은행을 포함 증권, 여신전문업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며, 이 중 은행업을 종사하는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이 주력 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은 산업에 속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방대한 영업 네트워크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부산은행은 영업 구역내 조밀한 점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지역민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지역밀착 영업을 추진하고 있어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으며 직원들의 맨파워도 매우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시중은행 대비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렵고, 영업구역이 주로 부·울·경 지역에 한정된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산은행의 경쟁우위 전략은 주요 영업구역내 고밀도의 다점포 전략 및 지역밀착경영을 통한 지역민, 지역기업들에게 우월한 서비스의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남은행은 지역은행 고유의 역할과 사명에 보다 충실하기 위하여 주 영업권역에 영업력을 최대한 집중하는 지역밀착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신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영업 거점인 울산공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마산자유 무역지역, 양산산막산업단지, 화전산업단지, 칠원산업단지, 거제옥포조선단지, 진사산업단지 및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Retail 영업의 지속적 강화, 비이자부문 영업과 이를 통한 연계영업 활

성화 등의 수익 다변화 전략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BNK금융지주의 경우 자체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금융지주사로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유입, 유상증자, 채권발행,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한편, BNK금융지주의 주력자회사인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의 경우 예금의 수취,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기능 등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은행업은 전체 이익 중에서 국내 이익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통적인 내수산업이며, 과거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강도 높은 감독 및 지원을 받아오는 한편, 감독 당국의 규제와 공익성 등의 정부 정책 영향 하에있는 규제산업입니다.

은행업은 예금의 수취,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통화신용정책의 중간 매개기관으로 국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이러한 업무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진입 시 특별법인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느 산업보다도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가장 많이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관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의 법령 규제를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등 법적,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동행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소득 증가율이 낮은 상황에서 가계대출은 급증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시류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들은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 예대율 규제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거시건전성부담금의 도입,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BNK금융그룹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더 큰 도약을 위해 ‘지역과 함께 세계로, 고객과 함께 미래로’라는 새로운 경영이념을 발표하고, 2015년 ‘대한민국 대표 지역금융그룹’, 2020년 ‘글로벌 초우량 지역금융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경영비전을 바탕으로 최고의 지역금융그룹에 걸맞는 확고한 위상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10월 경남은행을 최종 인수하여 기존 부산지역에 편중되었던 영업망을 부산, 울산, 경남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부·울·경지역의 동반성장에 기여하며, 지역금융그룹으로서의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성공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14년도 그룹 총자산은 93조 3,225억원으로 경남은행의 인수, 은행의 대출성장파 BNK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의 자산 성장에 힘입어 2013년 대비 82.5% 증가하였으며, 그룹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전기대비 5,053억원, 166.0% 증가한 8,098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8,098억원에는 경남은행 인수에 따른 영업매수차익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동 효과를 제외한 2014년도 당기순이익은 3,631억원으로 전기대비 586억원, 19.2%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자회사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은행 당기순이익은 전기대비 366억원 증가한 3,552억원, BNK투자증권 당기순이익은 전기대비 54억원 증가한 57억, BNK캐피탈 당기순이익은 전기대비 78억원 증가한 363억원을 시현하였고, BNK저축은행은 전기대비 224억원 증가하여 105억원 당기순이익을 시현함으로써 전기의 적자상태를 벗어나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경

남은행은 2014년 4/4분기에 자회사로 편입되어 4/4분기동안 87억원의 총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자본적정성 판단기준인 BIS비율은 11.91%, ROA와 ROE는 각각 1.47%와 20.5%,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대출채권비율도 각각 1.42%와 0.83%를 기록하여 주요 경영지표는 국내 금융지주사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는 순간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성공방식은 계승·발전시켜 핵심 경쟁력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통해 BNK만의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그룹 경영방침을 “ Great Innovation 2015 : 미래지향적 경영체제 확립” 으로 정하고 “ 지역과 함께 세계로, 고객과 함께 미래로” 라는 더 큰 도약을 위한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출발하여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성장하는 가장 모범적인 지주회사 성공 모델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나)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자회사의 관리 목적 및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이며, 당사의 자회사(부산은행, 경남은행, BNK투자증권, BNK캐피탈, BNK저축은행, BNK신용정보, BNK시스템 등 7개사)는 각각의 취급업무 전체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형성하여 별도 공시대상 사업부문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기재를 생략합니다.

(2) 시장점유율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KB금융지주, NH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지주회사와 당사 및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이 있으나, 사업 포트폴리오와 계열사 구조가 상이하고 기타 금융기관과의 관련성 등으로 인해 정확한 시장점유율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상기 “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현재 구체적인 신규사업 진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에 따라 은행 및 비은행부문의 균형 발전과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신규사업 진출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진출

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사업타당성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금융지주회사법 제5장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상법 제3편 제4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목적 및 경위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목적 및 이유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이하 “BNK 금융지주”)는 지난 2014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아 2014년 10월 10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BNK금융지주의 경남은행 보유지분은 56.97% 입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의 자회사

편입 시점부터 지주회사 체제 아래 그룹 내 시너지 창출을 통하여 고객 편익과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경남/울산지역을 주된 영업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남은행은 부산을 주된 영업기반으로 하는 부산은행과 중복점포가 많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각자의 영업노하우 및 리스크관리 체계의 공유, 유사한 조직체계 운영 및 전산장비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시너지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은행이 이러한 시너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BNK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모회사와 자회사 비지배주주들간의 이해상충 문제입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전부(100%)를 소유한 완전모자회사 사이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회사의 손익이 그 100% 모회사인 모회사의 손익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자회사 주식 일부를 모회사 이외의 비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 비지배주주들의 존재로 인해 모자회사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룹내 분야별 전문금융회사간 연계영업에 따른 경쟁력 제고 등의 시너지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경남은행이 100% 완전자회사가 아닌 한 이해상충의 가능성 및 신속한 의사결정의 제약 등으로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이해상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용 및 시간의 비효율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본건 주식교환을 통하여 경남은행의 비지배주주를 BNK금융지주의 주주로 전환함으로써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BNK금융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룹의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를 제고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룹 내 복수의 상장사를 유지하면서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 측면도 일부 소모적인 부분이 존재한 바, 이를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고려된 사안입니다.

또한, 경남은행의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유상증자 시, BNK금융지주는 주주총회나 주주 전원 동의절차 등 법률상 필요한 절차의 간소화 방법을 통해 신속한 자본확충

을 지원할 수 있고, 경남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그룹 안전성 지표 개선에 따라 경남은행의 신용도 상향 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복수의 상장사를 보유·유지함에 따른 주주총회, IR 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절감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은행과의 시너지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남은행의 경영활동의 유연성 및 의사결정의 신속함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남은행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의 완전자회사화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자회사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 증대, 그룹 일체성 강화를 통한 시너지 제고 및 경남은행의 적기 자본확충을 통한 자본 적정성 제고를 도모코자 합니다.

나. 진행상황 및 향후 일정

이사회 결의일		2015년 04월 01일
계약일		2015년 04월 01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15년 04월 16일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5년 05월 1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시작일	2015년 05월 13일
	종료일	2015년 05월 26일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주)BNK금융지주: 14,770원 (주)경남은행: 9,799원
<기타 중요 일정>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주식교환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예정일 경남은행의 주권실효통지 및 공고예정일 경남은행의 매매거래정지 예정일 교환기일 등 BNK금융지주 주식교환 등기 예정일 신주권교부 예정일 신주상장 및 경남은행 상장폐지 예정일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		2015년 04월 01일 2015년 04월 01일 ~ 05월 12일 2015년 05월 04일 2015년 05월 27일 2015년 06월 02일 2015년 06월 04일 2015년 06월 09일 2015년 06월 22일 2015년 06월 23일 2015년 06월 25일

--	--

2. 주식교환 계약서의 주요내용

가.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개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상호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대표이사	성 세 환
	법인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상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재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대표이사	손 교 덕
	법인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나. 주식수의 변경 및 1주당 금액

- BNK금융지주의 1주의 액면금액: 1주당 5,000원
- BNK금융지주의 발행주식수는 주식교환을 통해 21,555,347주가 발행되어 255,935,246주로 변경됩니다.

다. 주식교환비율 등

(1) 주식교환 비율

- 은행의 보통주식 1주당 BNK금융지주의 보통주식 0.6388022주

(2) 산출 근거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가)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BNK금융지주

구분	기간	금액
최근 1개월 가중평균종가(A)	2015년 03월 02일 ~ 2015년 03월 31일	14,804
최근 1주일 가중평균종가(B)	2015년 03월 25일 ~ 2015년 03월 31일	14,820
최근일 종가(C)	2015년 03월 31일	15,200

구분	기간	금액
주식교환가액{D=(A+B+C)/3}	-	14,941

주1) 기준주가는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5년 04월 01일)의 전일(2015년 03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①+②+③)÷3]$ 으로 산출합니다.

한편,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15년 03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가×거래량
2015-03-02	14,600	626,001	9,139,614,600
2015-03-03	14,750	449,017	6,623,000,750
2015-03-04	14,750	276,591	4,079,717,250
2015-03-05	14,650	307,762	4,508,713,300
2015-03-06	14,350	438,692	6,295,230,200
2015-03-09	14,650	413,338	6,055,401,700
2015-03-10	14,450	450,297	6,506,791,650
2015-03-11	14,250	641,279	9,138,225,750
2015-03-12	14,350	982,578	14,099,994,300
2015-03-13	14,400	441,901	6,363,374,400
2015-03-16	14,500	296,821	4,303,904,500
2015-03-17	15,050	490,919	7,388,330,950
2015-03-18	15,300	635,260	9,719,478,000
2015-03-19	15,400	557,458	8,584,853,200
2015-03-20	15,250	662,617	10,104,909,250
2015-03-23	15,500	456,450	7,074,975,000
2015-03-24	15,200	678,387	10,311,482,400
2015-03-25	14,650	1,043,391	15,285,678,150
2015-03-26	15,250	705,476	10,758,509,000
2015-03-27	14,700	960,413	14,118,071,100
2015-03-30	14,550	757,300	11,018,715,000
2015-03-31	15,200	505,034	7,676,516,800

일자	증가(원)	거래량(주)	종가×거래량
1개월 가중평균증가(원)			14,804
1주일 가중평균증가(원)			14,820
최근일 증가(원)			15,200

(나)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주)경남은행

구분	기간	금액(원)
최근 1개월 가중평균증가(A)	2015년 03월 02일 ~ 2015년 03월 31일	9,876
최근 1주일 가중평균증가(B)	2015년 03월 25일 ~ 2015년 03월 31일	9,388
최근일 증가(C)	2015년 03월 31일	9,370
주식교환가액{D=(A+B+C)/3}	-	9,545

주1) 기준주가는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5년 04월 01일)의 전일(2015년 03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증가, ②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증가, ③ 최근일 증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①+②+③)÷3]$ 으로 산출합니다.

한편,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15년 03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증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증가(원)	거래량(주)	종가×거래량
2015-03-02	10,400	137,363	1,428,575,200
2015-03-03	10,400	310,872	3,233,068,800
2015-03-04	10,300	220,152	2,267,565,600
2015-03-05	10,350	208,223	2,155,108,050
2015-03-06	10,250	396,702	4,066,195,500
2015-03-09	10,250	234,665	2,405,316,250
2015-03-10	10,200	322,942	3,294,008,400
2015-03-11	10,000	420,340	4,203,400,000
2015-03-12	10,150	287,148	2,914,552,200
2015-03-13	9,990	438,615	4,381,763,850
2015-03-16	9,930	204,622	2,031,896,460
2015-03-17	9,900	382,388	3,785,641,200
2015-03-18	9,870	264,454	2,610,160,980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가×거래량
2015-03-19	9,700	405,984	3,938,044,800
2015-03-20	9,500	464,160	4,409,520,000
2015-03-23	9,510	311,897	2,966,140,470
2015-03-24	9,510	155,682	1,480,535,820
2015-03-25	9,440	375,656	3,546,192,640
2015-03-26	9,420	202,986	1,912,128,120
2015-03-27	9,360	195,968	1,834,260,480
2015-03-30	9,290	182,450	1,694,960,500
2015-03-31	9,370	169,528	1,588,477,360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9,876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9,388
최근일 종가(원)			9,370

※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및 제176조의5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 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3) 단주의 처리

- BNK금융지주는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BNK금융지주의 신주를 발행 함에 있어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 주에게 본 주식교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주권상장일 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BNK금융지주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함

- BNK금융지주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지급 할 주식교환 교부금은 없는 것으로 함

라. 자기주식의 처리

구분	BNK금융지주	경남은행
자기주식 보유현황	-	30,920주(0.0%(주1))
자기주식 처리방침	-	교환비율에 상응하는 BNK 금융지주의 기명식 보통주

구분	BNK금융지주	경남은행
		식 또는 현금(단주인 경우) 을 지급할 예정임(주2)
상대방 회사 지분 보유현황	경남은행 보통주 44,677,529주(56.97%)(주3)	-

주1)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경남은행이 보유한 자기주식 30,920주 외에 경남은행이 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하게 될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경남은행은 위와 같이 배정받은 BNK금융지주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3년(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한 자기주식 30,920주에 대하여 배정받은 BNK금융지주 주식의 경우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6개월)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주식처분으로 인해 BNK금융지주 주식의 주가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고, BNK금융지주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화될 수 있습니다.

주2) 본건 주식교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경남은행이 주식교환일 시점에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완전모회사인 BNK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법이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i) 법률상 명시적으로 완전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교환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ii) 상법상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제한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회사의 합병, 영업전부의 양수 이외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들고 있다는 점(제342조의2 제1항 제1호), (iii)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교환에 의하여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처분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규정(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1항)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은 경남은행이 주식교환일 시점에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교환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률검토 결과, 경남은행이 본건 주식교환의 주식교환일 당시 보유하는 자기주식(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여 경남은행이 본건 주식교환의 주식교환일 전에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에 대하여 교환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률자문사의 의견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이 주식교환일 시점에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교환비율에 따라 BNK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주3) BNK금융지주가 보유중인 경남은행 보통주 44,677,529주는 본 주식교환에 의한 BNK금융지주 기명식 보통주식 배정 대상이 아닙니다.

마. 증가할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1) 자본금 : BNK금융지주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해 증가할 자본금의 총액은 BNK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해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주식 액면 금액인 5,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자본준비금 : BNK금융지주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해 증가할 자본준비금은 주식교환에 따라 새로이 발행되는 BNK금융지주의 신주 발행가액 총액에서 상기 자본금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단, 관계 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위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함

바. 주식교환의 승인

-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각각 2015년 5월13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 주식교환을 각각 승인함. 다만, 추후 증권신고서의 제출 및 효력발생 등 절차에 따른 주식교환절차의 일정 조정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 위 일자를 변경할 수 있음

사. 주식교환일 : 2015년 6월 4일(다만, 주식교환의 일정을 조정해야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 일자를 변경할 수 있음)

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본 계약 체결 후 본 주식교환일까지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2) 본 계약 체결 후 본 주식교환일까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가) 본 주식교환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BNK금융지주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BNK금융지주가 제안한 주식매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의 합이 금 2,000억원을 초과하거나, BNK 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의 6%를 초과하는 경우

(나) 본 주식교환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경남은행이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경남은행이 제안한 주식매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의 합이 금 1,000억원을 초과하거나, 경남은행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3) 본 계약 체결 후 본 주식교환일까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가)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들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나)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본 주식교환에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다)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기타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당사자들은 본 주식교환을 위하여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별도협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5)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BNK금융지주, 경남은행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자. 기타

(1) BNK금융지주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그 주식을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봄

(2) 본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BNK금융지주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래의 임기 만료일까지 계속되며, 상법 제360조의13은 본 주식교환의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됨

(3) 본 주식교환과 관련한 제반비용 및 각종 세금은 그와 같은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세금이 부과되는 각 당사자가 각각 부담함

3.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범위 및 요건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의범위 내에서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의

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사실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교환 당사회사들은 모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당사회사인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에 모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나. 주식매수예정가격

(1) BNK금융지주 보통주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14,770원
산출근거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1)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4항에 따라,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 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대한 매수가격 결정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원이 다른 판

	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위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는 본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에 따라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산일: 2015년 3월 31일)

구분	금액	산정 기간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4,686원	2015년 02월 02일 ~ 2015년 03월 31일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4,804원	2015년 03월 02일 ~ 2015년 03월 31일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4,820원	2015년 03월 25일 ~ 2015년 03월 31일
기준매수가격 $[(①+②+③)/3]$	14,770원	-

상기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2015년 3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2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가×거래량
2015-02-02	13,950	370,699	5,171,251,050
2015-02-03	14,450	862,034	12,456,391,300
2015-02-04	14,550	615,734	8,958,929,700
2015-02-05	13,850	1,489,361	20,627,649,850
2015-02-06	13,900	616,975	8,575,952,500
2015-02-09	13,750	340,433	4,680,953,750
2015-02-10	13,850	473,788	6,561,963,800
2015-02-11	14,700	1,213,537	17,838,993,900
2015-02-12	14,450	1,073,836	15,516,930,200
2015-02-13	14,900	685,954	10,220,714,600
2015-02-16	14,700	369,038	5,424,858,600
2015-02-17	15,300	926,101	14,169,345,300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가×거래량
2015-02-23	15,200	575,833	8,752,661,600
2015-02-24	15,250	586,296	8,941,014,000
2015-02-25	15,000	359,112	5,386,680,000
2015-02-26	15,000	510,934	7,664,010,000
2015-02-27	14,900	487,998	7,271,170,200
2015-03-02	14,600	626,001	9,139,614,600
2015-03-03	14,750	449,017	6,623,000,750
2015-03-04	14,750	276,591	4,079,717,250
2015-03-05	14,650	307,762	4,508,713,300
2015-03-06	14,350	438,692	6,295,230,200
2015-03-09	14,650	413,338	6,055,401,700
2015-03-10	14,450	450,297	6,506,791,650
2015-03-11	14,250	641,279	9,138,225,750
2015-03-12	14,350	982,578	14,099,994,300
2015-03-13	14,400	441,901	6,363,374,400
2015-03-16	14,500	296,821	4,303,904,500
2015-03-17	15,050	490,919	7,388,330,950
2015-03-18	15,300	635,260	9,719,478,000
2015-03-19	15,400	557,458	8,584,853,200
2015-03-20	15,250	662,617	10,104,909,250
2015-03-23	15,500	456,450	7,074,975,000
2015-03-24	15,200	678,387	10,311,482,400
2015-03-25	14,650	1,043,391	15,285,678,150
2015-03-26	15,250	705,476	10,758,509,000
2015-03-27	14,700	960,413	14,118,071,100
2015-03-30	14,550	757,300	11,018,715,000
2015-03-31	15,200	505,034	7,676,516,800
2개월 가중평균종가(원)			14,686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14,804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14,820

(2) 경남은행 보통주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9,799원
산출근거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1)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4항에 따라,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 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대한 매수가격 결정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1) 위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는 본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에 따라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산일: 2015년 3월 31일)

구분	금액	산정 기간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0,134원	2015년 02월 02일 ~ 2015년 03월 31일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9,876원	2015년 03월 02일 ~ 2015년 03월 31일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9,388원	2015년 03월 25일 ~ 2015년 03월 31일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9,799원	-

상기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2015년 3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2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증가(원)	거래량(주)	증 가× 거래량
2015-02-02	10,850	150,719	1,635,301,150
2015-02-03	10,900	156,064	1,701,097,600
2015-02-04	10,800	200,270	2,162,916,000
2015-02-05	10,800	235,431	2,542,654,800
2015-02-06	10,900	166,345	1,813,160,500
2015-02-09	10,900	166,185	1,811,416,500
2015-02-10	11,050	197,925	2,187,071,250
2015-02-11	11,000	147,814	1,625,954,000
2015-02-12	10,850	137,578	1,492,721,300
2015-02-13	10,950	89,701	982,225,950
2015-02-16	11,050	64,443	712,095,150
2015-02-17	10,200	1,180,529	12,041,395,800
2015-02-23	10,400	382,667	3,979,736,800
2015-02-24	10,350	198,181	2,051,173,350
2015-02-25	10,500	119,758	1,257,459,000
2015-02-26	10,550	66,050	696,827,500
2015-02-27	10,500	60,839	638,809,500
2015-03-02	10,400	137,363	1,428,575,200
2015-03-03	10,400	310,872	3,233,068,800
2015-03-04	10,300	220,152	2,267,565,600
2015-03-05	10,350	208,223	2,155,108,050
2015-03-06	10,250	396,702	4,066,195,500
2015-03-09	10,250	234,665	2,405,316,250
2015-03-10	10,200	322,942	3,294,008,400
2015-03-11	10,000	420,340	4,203,400,000
2015-03-12	10,150	287,148	2,914,552,200
2015-03-13	9,990	438,615	4,381,763,850
2015-03-16	9,930	204,622	2,031,896,460
2015-03-17	9,900	382,388	3,785,641,200
2015-03-18	9,870	264,454	2,610,160,980
2015-03-19	9,700	405,984	3,938,044,800

일자	증가(원)	거래량(주)	증가×거래량
2015-03-20	9,500	464,160	4,409,520,000
2015-03-23	9,510	311,897	2,966,140,470
2015-03-24	9,510	155,682	1,480,535,820
2015-03-25	9,440	375,656	3,546,192,640
2015-03-26	9,420	202,986	1,912,128,120
2015-03-27	9,360	195,968	1,834,260,480
2015-03-30	9,290	182,450	1,694,960,500
2015-03-31	9,370	169,528	1,588,477,360
2개월 가중평균증가(원)			10,134
1개월 가중평균증가(원)			9,876
1주일 가중평균증가(원)			9,388

다.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아래 '(1)~(3)'의 내용은 당사회사인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에 모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 행사절차 및 방법

(가) 반대의사의 통지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15년 4월 16일(24시))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2015년 5월 12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하여야 하며,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 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2) 서면 반대의사 표시기간: 2015년 5월 12일까지

(3) 주식매수 청구기간: 2015년 5월 13일부터 2015년 5월 26일까지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위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4) 접수 장소

(BNK금융지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본점 21층 재무기획부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

(경남은행)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642 본점 14층 재무기획부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

라.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의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1) BNK금융지주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BNK금융지주가 제안한 주식매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의 합이 금 20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BNK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의 6%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2) 경남은행이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경남은행이 제안한 주식매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의 합이 금 10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경남은행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아래 '(1)~'(4)'의 내용은 당사회사인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에 모두 해당하는 내

용입니다.)

(1)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지급하고 필요 시 통상적인 자금조달 수단 활용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명부주주: 주주가 신고한 은행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4)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하는 BNK금융지주 또는 경남은행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개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 거주자인 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BNK금융지주 또는 경남은행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5)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당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는바, 그와 같은 주식처분으로 인해 당사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당사 주주들의 지분가치를 희석화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본 주식교환에 따라 BNK금융지주株式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경남은행은 위와 같이 배정 받은 BNK금융지주株式을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여야 하는바, 그와 같은 주식처분은 BNK금융지주株式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BNK금융지주 주주들의 지분가치를 희석화할 수 있습니다.

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사실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주식교환 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제되는 등 본 주식교환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어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株式을 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기타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2015년4월9일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